



제428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기후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수립·시행 의무 부과〉

■ 전진숙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9725호)

2025. 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지민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수립·시행 의무 부과	2

I. 개요

1.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9725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전진속의원 등 10인

(2) 제 안 일 : 2025. 4. 10.

(3) 회 부 일 : 2025. 4. 11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,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, 생태계 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·축산물·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.

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II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수립·시행 의무 부과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21조의2(기후변화에 따른 안전관리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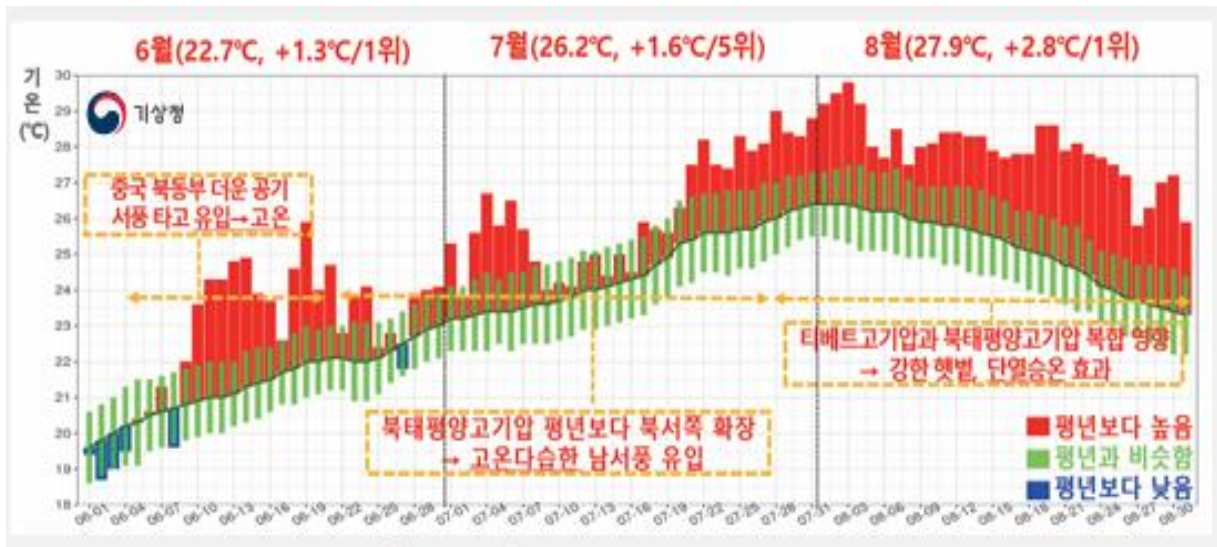
* 시행일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제적, 사회적, 환경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, 폭염, 한파, 대규모 홍수, 극심한 가뭄 등은 인명 피해와 함께 농업, 산업,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.

- 참고로, 2024년 이상기후보고서¹⁾에 따르면, 지난해 한국의 여름철(6~8월)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1.9℃ 높은 25.6℃로,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였으며, 열대야일수도 20.2일로 평년(6.5일)의 3.1배에 달하여 역대 1위에 올랐음.

< 2024년 여름철 평균기온 >



자료: 2024년 이상기후보고서

- 이러한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,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, 생태계 변화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, 식품의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음.
- 이에 개정안은 관계중앙행정기관²⁾의 장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1)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영향 평가 및 정부 차원의 효과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하여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.

2) 「식품안전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관계중앙행정기관”이란 기획재정부·교육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환경부·해양수산부·식품의약품안전처·관세청·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을 말하고, “관계행정기관”이란 식품 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.

□ 다만, 현행법 제6조³⁾에서는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

기본계획은 ‘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’, ‘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’ 및 ‘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’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참고로, 제5차(’21~’25) 기본계획에는 ‘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’ 등 4대 추진전략과 ‘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’ 등 15대 과제가 설정되어 있고, 2025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는 ‘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’ 과제를 위한 ‘기후변화 등 대비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’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,

동 시행계획에 따라 식약처, 해양수산부,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과 관련된 연구 등을 수행 중임.

3) 「식품안전기본법」

제6조(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
2.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3. 식품안전법령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
5.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6. 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 제5차(2021~2025)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>

추진 전략 및 과제	❶ [위해 예방]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	❶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❷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❸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❹ 위기대응시스템 정비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
	❷ [생산·제조]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	❶ 농산물 생산환경 개선 ❷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❸ 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❹ 제조·가공 생산환경 개선
	❸ [유통·수입] 과학적 유통·수입 관리체계 강화	❶ 유통·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❷ 유통·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❸ 부정식품 유통·판매행위 근절
	❹ [소비·생활]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	❶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지원 ❷ 식품정보 제공 확대 ❸ 안전한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 급식 제공 ❹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

< 2025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>

세부 과제명			추진 부처	'25년 예산 (백만원)
전략 1. [위해 예방]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(45개)				
1-1.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				
1-1-㉔	기후변화 등 대비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			
	①	유해미생물 및 식중독균 관리 강화	식약처	179
	②	시구아테라 어독 적조생물 모니터링 및 독성 발생 기작 연구	해수부	50
	③	패독플랑크톤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연구	해수부	100
	④	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고도화	식약처	104
	⑤	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오염실태 모니터링 및 저감화 기술 연구	농진청	225

다.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:

-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. 다만,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, 동 계획에 기후변화 등 위해요인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등을 담아 운영하고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493